

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(주거환경관리사업) 정비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고시 제2014-146호(2014.05.23)로 정비구역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10-7번지 일원의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4월 25일

수원시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

2.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(해제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증감	변경	
해제	행궁마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(주거환경관리사업)	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10-7번지 일원	137,475	감) 137,475	-	수원시고시 제2014-146호 (2014.5.23.)

3. 정비구역 해제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해제하고자 함.
-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5. 고시도면: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재생과(☎031-228-339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관부서	도시재생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홍예진	전화번호	031-228-3398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